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약초마을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08010046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08.09.1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0.28

www.greencho.co.kr

『약초마을』 정보공개서

약초마을 YCM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약초마을 YCM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중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약초마을』 가맹사업본부 약초마을 YCM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 127, 가동 2층 206호 (대방동, 대방동현대아파트 현대종합상가)		
전화번호	02-812-5215	팩스번호	해당 없음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부	담당자 전화번호	02-817-5215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franchise.ftc.go.kr>)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정보제 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중요한 내용의 일부가 삭제되어 있으니,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수령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 소개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경성키친 육개장&부대찌개』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직영점 운영 현황

♣. 가맹본부 소개

1. 브랜드 소개

CI LOGO

약초마을만의 고유한 로고



약초마을은 고전과 전통의 맛을 느끼면서 웰빙시대에 맞는 영양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부담없는 가격구성과 차별화 된 다양한 메뉴, 신속한 서비스로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실현하는 약초마을은 가족의 건강까지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신개념 프랜차이즈입니다.

약초마을은 가맹점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독특한 마케팅, 철저한 가맹관리 자부심!

브랜드 파워!, 스포츠조선 고객만족 수상, 서울시 맛집선정등 다수 수상!

창의 IDEA

약초마을만의 철저한 외식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고의 맛을 추구하도록 노력합니다.

정직 HONESTY

항상 고객과 가맹점 사장님을 생각하는 기본을 잊지 않겠습니다

인화 HARMONY

철저하고 체계화된 교육을 통하여 최고의 레스토랑을 만들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국 전통의 맛, 한국인의 입맛!

성공비결

- 불황의 한국, 불황을 이겨낼 맛 힘
 - 외식 사업의 16년 노하우
 - 독창적이고 더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
- 더이상 흔한 맛으로 승부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약초마을의 이념

약초마을은 독창적인 레시피개발과 창의적인 마케팅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식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약초마을만의 등록 상표, 서비스 마크, 캐릭터, 인테리어의 독창성으로 모든 체인점에서 본점과 같은 맛과 분위기를 연출하며 항상 맛과 정성을 그대로 음식에 베어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약초마을 역사

1996. 04. 01. : 약초마을(죽염삼계탕) 창립
서울 동작구 대방동 49-9호(대표 박일남)
"동의보감" 및 "신약"에따른 식품 개발 모든 메뉴에 인산죽염 사용
1997. 09. 16 : 약초마을로 상호변경(대표자 허윤덕)
1998. 09. 10 : 대표자변경(대표자 조영란)
2001. 09. 18 : 대표자변경(대표자 허윤덕)
2003. 04. 19 : 상표등록(제40-0545612호)
2003. 08. 16 : 서비스표등록(41-0089443호)
2006. 09. 01 : 1호점(온수점) 개점
2006. 10. 13 : 2호점(중앙점:서울역) 개점
2006. 10. 27 : 점포 이전(동작구 대방동339-1 솔표빌딩)
2007. 02. 08 : MBC방송 생방송 오늘아침 출연
2007. 04. 04 : 상표등록(제40-0704977호)
2007. 05. 01 : 3호점(광주점) 개점
2007. 05. 09 : 서비스표등록(41-0148451호)
2007. 11. 28 : 동작구 맛있는집 지정(제2007-14호)
2007. 12. 10 : 동작구 모범업소 지정(제2007-0016호)
2008. 02. 12 : 4호점(서초점) 개점
2008. 02. 26 : 5호점(송파점) 개점
2008. 03. 12 : HCN방송 정보메거진 해피라이프 출연
2008. 03. 16 : KBS-2방송 오천만의 일급비밀 출연
2009. 10. 12 : 6호점(남양주점) 개점
2010. 05. 05 : 7호점(광화문점) 개점
2010. 12. 16 : 8호점(문래점) 개점
2011. 05. 07 : 9호점(남대문점) 개점
2011. 06. 01 : 서울특별시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인증
2011. 07. 07 : 10호점(광명점) 개점
2012. 02. 05 : 11호점(구로점) 개점
2012. 02. 24 : 12호점(강서점) 개점
2012. 06. 08 : 13호점(서래마을점) 개점
2012. 08. 09 : 14호점(수지점) 개점
2012. 08. 01 : 서울특별시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2년 연속 인증
2013. 04. 23 : 15호(분당점) 개점
2013. 05. 16 : 16호점(사당점) 개점
2013. 07. 01 : 동작구 착한가게, 착한가격 선정
2013. 09. 01 : 서울특별시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3년 연속 인증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및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약초마을 YCM	영업표지	『약초마을』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 127, 가동 2층 206호 (대방동, 대방동현대아파트 현대종합상가)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3. 05. 14.	허윤덕	02-812-5215	해당 없음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108-20-49488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혈족 (임원)	김정운	약초마을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 127, 가동 2층 206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허윤덕	02-812-5215	해당 없음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혈족 (임원)	김석진	약초마을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 127, 가동 2층 206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허윤덕	02-812-5215	해당 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 없음 : 당사는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약초마을』	
상 호	『약초마을』 _____ 점	
상표(서비스표)	 약초마을	상표 등록번호 : 제4010145680000호
	 약초마을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102763570000호
광 고	가맹본부 소개	1~2 Page 내용 참조
그 밖의 영업표지	 약초마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업표지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 현재 가맹본부 약초마을 YCM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145,202	84,399	60,803	86,900	9,295	5,339
2022년	147,078	89,315	57,763	62,400	-7,069	-9,013
2021년	145,572	93,298	52,274	50,800	-24,302	-26,667

2)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위의 1)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은 모두 가맹사업 관련 임원이며,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은 없습니다. 가맹사업 관련 임원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재직회사 및 직위	담당업무
허윤덕	대표	2001.09.18. ~ 현재	약초마을 공동운영	매장 관리 총괄

		2013.05.14. ~ 현재	약초마을 YCM 대표	직영 사업 총괄
김정운	사장	2001.09.18. ~ 현재	약초마을 공동운영	매장 운영 총괄
		2013.05.14. ~ 현재	약초마을 YCM 사장	회사 업무 총괄
김석진	본부장	2013.05.14. ~ 현재	약초마을 YCM 본부장	가맹 사업 업무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0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 해당 없음 : 최근 3년 동안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약초마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의 지식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제29류	출원 2006.08.18.	출원 제4020060042148호	허윤덕	2027.04.14.
		등록 2007.04.04.	등록 제4007049770000호		
	제35류	출원 2006.08.18.	출원 제4120060020815호	허윤덕	2027.05.09.
		등록 2007.05.09.	등록 제4101484510000호		
	제43류	출원 2013.02.28.	출원 제4120130007532호	허윤덕	2033.12.27
		등록 2013.12.27.	등록 제4102763570000호		
	제29류	출원 2013.02.28.	출원 제4020130012626호	허윤덕	2033.12.27
		등록 2013.12.27.	등록 제4010145680000호		

▶ 당사의 상표(서비스표) 지식재산권은 약초마을 YCM 허윤덕 대표가 직접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에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관계기관에 등록된 당사의 특허, 상표,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약초마을』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2006년 8월 16일

※ 『약초마을』 직영사업을 시작한 날짜 : 2001년 9월 18일

2. 『약초마을』 연혁

☞ 『약초마을』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약초마을	약초마을	허윤덕	2006.08.16.~2013.05.13.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26 (대방동, 솔표빌딩 1-102)
약초마을 YCM	약초마을	허윤덕	2013.05.14. ~ 현재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 127, 가동 2층 206호(대방동, 대방동현대아파트 현대종합상가)

3. 『약초마을』 업종

☞ 『브랜드명』 업종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약초마을	기타 외식	삼계탕

4.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 지방 자치 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지역별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3.12.31.			2022.12.31.			2021.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6	6	0	6	5	1	9	8	1
서울	5	5	0	5	4	1	6	5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1	0	1	1	0	3	3	0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직영점 및 가맹점의 자세한 현황은 당사에 비치되어 있는 점포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3년	5	1	0	0	0	6
2022년	8	0	0	3	0	5
2021년	8	0	0	0	0	8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의 총 수

☞ 해당 없음 : 해당 가맹사업 외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총 가맹점 수	2023년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산출 가맹점 수
		연평균 매출액	면적(3.3m ²) 당 매출액	연평균 매출액	면적(3.3m ²) 당 매출액	연평균 매출액	면적(3.3m ²) 당 매출액	
전체	6	601,328	5,619	1,850,373	19,076	67,600	938	6곳
서울	5	708,074	6,211	1,850,373	19,076	236,600	1,892	5곳
부산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인천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대전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울산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세종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경기	1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강원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충북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전북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전남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경북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경남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제주	-	해당 없음	-	-	-	-	-	5곳 미만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원재료공급횟수X20,000천원) + {(원재료공급횟수 X 20,000천원) X 30%}]라는 산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추정한 매출로 실제 가맹점에서 올린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면적(3.3m²)당 연간 평균 매출액은 [연간 평균 총매출액/평균 가맹점 면적(m²)*3.3] 산식으로 추정하였으며, 위 표에 기재된 상한과 하한 내역은 지역별 최고 매출과 최저 매출을 올린 매장의 매출액을 면적(3.3m²)당 매출로 환산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 또한, 위 추정 매출액은 가맹점이 위치한 지역 및 상권, 실제 매장의 크기, 실제 운영한 영업개월 수,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이 상이하므로 전국 평균 매장의 평균 매출액이 아니며, 귀하가 실제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 위의 추정 자료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귀하가 요청할 경우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약초마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약초마을]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6	3,557일

9.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주소, 대표자의 이름, 대표 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 및 가맹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 해당 없음 : 직전 사업연도 말 『약초마을』과 관련하여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1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 당사가 정한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의 상호 및 담당지점 또는 담당부서	소재지	전화번호
신한은행 태평지점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20번지	02-756-0506(교환3865)

2) 가맹금 예치절차

☞ 당사가 정한 예치 기관의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 체결 후 다음날까지 당사가 사전에 신청해 둔 [신한은행] 예치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당사는 귀하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이후 이 금액을 수령합니다.

※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에 따라 예치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관련된 정보

☞ 당사는 예치기관을 정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은행기관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동시에 선정할 수 있으며, 기타 여건에 따라 당사는 은행에 예치를 요청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증권을 제시하여 당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선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당사가 체결한 피해보상보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약초마을 YCM	가맹본부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 ~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사업 개시일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가맹본부 경유→보험회사 접수→보험회사 조사→지급 여부 결정→보험금 지급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귀하에게 증권을 제출하고 당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의 시정조치 등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약초마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략 금 일천삼백만원(₩13,000,000)<부가세포함>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별도구입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최초 가맹금** : 개시지급금, 예탁금, 할부금의 첫 지불액, 선금임차료, 설비구입대금 등 명칭이 어떻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 또는 계속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당사의 최초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11,000,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가맹점모집 및 개설 시 비용소요	개점 전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 **가맹비 대가 내역** : 가맹계약 당시 가맹점운영권을 부여 받기 위한 대가, 가맹사업 운영 노하우 이전의 대가, 상표 등 영업표지의 최초 상용 허락의 대가, 입지선정 시 조언의 대가, 각종 매뉴얼 사용 허락 및 가맹사업 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 제공의 대가, 개점 시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대가, 개점을 위한 최초 교육 및 조리 노하우 제공의 대가 등

※ **가맹비 반환 조건** : 개점 이전 해지, 개점 이후 해지

1. **개점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점을 위해 당사가 본 계약상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용은 귀하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개점 이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사로부터 노하우의 이전이 개시되는 등 가맹점 영업을 개시된 이후에는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가맹비 중 가맹계약기간에 대한 미경과일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반환 조건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당사제공물품 및 로얄티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 시 정산후 반환

※ **계약이행보증금 수령 조건** : 당사로부터 구입한 상품·자재의 대금 등의 채무액 또는 당사에 대한 계약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조건** : 계약기간의 만료 및 해지로 인한 종료 시 영업표지 철거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제한 후 잔액을 상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비고
합계	13,000,000	
가맹비	11,000,000	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	부가세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귀하에게 증권을 제출하고 당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정해진 기간을 넘길 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비용 등 그 밖의 필요비용

☞ 해당 없음 : 귀하는 당사에 최초 가맹금 외에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에 개점을 위해 필요한 품목은 귀하의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가 정한 표준 인테리어 안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정 품목 또는 기준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원만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 전 도면설계를 감리할 수 있고,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당사는 이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청구

하지 않는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언 요청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분석→분석 및 결과 타당성 유무 통지→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미성년자가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9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해당 없음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은 귀하가 자체 구입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 1)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판촉, 교육훈련, 간판류 임차료,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리모델링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시스템 유지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해당 없음				
리스료		해당 없음				
광고분담금		해당 없음				당사 전부 부담
판촉분담금		해당 없음				당사 전부 부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필요시 산정	사전 통지	반환 안됨	교육비로 비용소요	특별교육 필요시 사전통지
간판류 임차료		해당 없음				
영업표지 변경,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개선에 따른 변경 비용		해당 없음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않음
각종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귀하의 귀책사유 발생 시 비용 산정	시공시작 전일까지	반환 안됨	교체·보수 비용소요	귀하의 귀책사유 외에는 교체보수를 요구하지 않음
재고관리비용		해당 없음				
회계처리비용		해당 없음				
POS 사용료		해당 없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약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반환 안됨	지연이자 비용정산	해당 지급 항목의 약정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 당사는 자체 제조 생산하는 품목만 있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3) 가맹본부가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 당사는 귀하의 재고관리에 대한 감독은 실시하지 않으며, 회계 범위의 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매출액 현황은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공개서 작성 등을 위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당시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 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금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귀하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에만 가맹계약을 해지합니다. 이에 귀하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 위의 조건은 귀하가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운영하는 『약초마을』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처분일 [2]개월 전에 당사의 서면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양수인은 그에 따른 [가맹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귀하는 계약기간 만료 및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간판 및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 영업표지가 표시된 모든 시설물, 집기, 비품 등의 철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의 지적재산권의 침해 및 무단 상표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반일 1일당 금 일십만원(W100,000)<부가세 없음>의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당사의 시스템이 반영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환 또는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공급된 물품 중 유통기간 이내,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물품 등의 완전물물에 한하여 당사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 및 문서, 도면, 도서 등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가 공급하는 원부재료 내역 중 죽염분말소스와 죽염액체소스는 반드시 당사에서 구입하여야 하나 삼계닭, 토종닭 등은 규격만 강제하고 거래상대방은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규격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부가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는 상기 표의 품목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약초이야기]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4.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판매상품명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1차 : 구두 경고, 2차 : 2회 이상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후 가맹계약 해지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신메뉴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귀하가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1차 : 2회 이상 서면 시정조치 2차 : 물품공급 중단 후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판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죽염 삼계탕	12,000	죽염 황기 오리	50,000
죽염 옷달	40,000	죽염 옷 오리	50,000
죽염 황기 백숙	40,000	죽염 유향 오리	70,0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삼계탕을 주 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약초마을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사업자 간 이격 거리 반경 1km 보호	가맹계약서 [별첨 1] 지도에 표기

※ 귀하의 영업지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구역, 세대수, 거주 인구수, 유동 인구수, 가맹점 간 거리, 지역 상권의 특성, 주요 근린시설,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귀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마트, 공항, 호텔,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내,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는 역사 등 집합매장 내 가맹점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되어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구분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영업지역을 재조정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와 동의를 구하는 방법

☞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를 얻어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4에서 정하는 재조정 사유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리 알리는 절차	동의를 구하는 방법
재조정 사유 발생→당사 담당팀 검토→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영업지역 변경 완료 (→가맹점사업자 미동의→영업지역 변경 불가)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 통지→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가맹점사업자 동의 시 15일 이내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규 점포 입점 불가)

※ 영업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해 귀하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귀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 없음: 당사는 [약초마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 없음: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귀하는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가맹점 위치 및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귀하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귀하에게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귀하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 『약초마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갱신일로부터 만 [2]년씩 갱신합니다.

※ 귀하가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당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법」 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또는 E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된 조건 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	-

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위 표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계약 및 종료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또는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또는 D. 양자가 합의하여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하는 경우

☞ 귀하가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당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에 재계약 절차는 계약기간 만료 전 상호 합의하여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조건을 추가하는 특별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또는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 귀하는 계약기간 만료 및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간판 및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 영업표지가 표시된 모든 시설물, 집기, 비품 등의 철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의 지적재산권의 침해 및 무단 상표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반일 1일당 일십만원(₩100,000)<부가세 없음>의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일반해지, 즉시해지, 합의해지 등 3가지로 그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해지할 수 있는 일반해지 사유
1. 귀하가 영업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귀하가 가맹점 승인 보류 판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3. 귀하가 당사의 승인 없이 지정된 영어장소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4. 귀하가 당사의 경영지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귀하가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 당사의 상품을 나타내는 일체의 표지를 당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당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6.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On-Line 및 Off-line 상에서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

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7. 귀하가 당사의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8.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9. 귀하가 가압류·가처분(단순 채권보전인 경우 제외) 강제경매, 조세채납처분 등을 받은 경우
10. 귀하가 본 계약서 상에서 정한 일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1. 귀하가 물류공급의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12.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당사에 해지권이 유보되거나 귀하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귀하가 해지할 수 있는 일반해지 사유
1. 당사가 계약서에 규정된 당사의 기타 권리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당사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본 건 가맹사업 전체에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어 귀하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

(2)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해지 사유
1.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귀하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귀하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

(3)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 당사와 귀하가 계약기간 중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상대방에게 2개월 이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합의 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 양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1. 「가맹사업법」, 기타 식품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는 경우
2. 귀하와 당사가 상호 서면요청에 의거하여 합의한 경우

- ☞ 재조정 및 동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당사 담당팀 검토→수정 계약서(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가맹점사업자 동의→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또한,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계약 양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추가 작성된 것은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단, 본 계약의 수정 또는 변경은 계약당사자의 기명날인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 상속에 필요한 절차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환매	불가능	-	환매제도 운영 안함
양도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

			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상속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 의사 통지→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교육비 부담 및 개점 전 교육 이수→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 양도양수 시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범위는 직계 준비속에 한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2) 가맹점운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조건

☞ 귀하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의 승인 후 점장 등을 고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대리경영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시 대리 경영
위탁경영	불가능	-	-

※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 귀하는 계약기간의 존속 중 당사의 허락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귀하가 경업을 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삼계탕을 주 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승인 요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4)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 해당 없음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해당 없음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개별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광고 및 판촉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일부의 광고 및 판촉 비용을 부담한 경우 집행내역 통보 내용

- ☞ 해당 없음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는 당사의 영업상 비밀이나 노하우를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귀하는 당사가 제공하는 운영매뉴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육·훈련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를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상의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가 계약기간 내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후 영업비밀 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귀하가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지 않거나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 표 등의 사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귀하는 손해배상 외에 위반일 1일당 금 일십만원(₩100,000)<부가세 없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그 밖에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의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5) 당사 또는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약 [40]일 내외	13,000,0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담당자 배정	D-40(1일)	비용 없음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점포 현황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D-39(1일)	비용 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26~38(13일)	자체 비용 소요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제공	D-25(1일)	자체 비용 소요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계약금) 예치	D-24(1일)	예치가맹금 :13,000,000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시공비용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22~23(2일)	자체 비용 소요
각종 공사	- 각종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완료	D-2~21(20일)	교육비 : 가맹비에 포함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 각종 물품 입고	D-1(1일)	자체 비용 소요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자체 비용 소요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 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 상담, 점포 선정, 임대차 계약, 가맹계약 체결 등의 소요시간과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

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사자 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조항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 2)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 갱신 시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 불가피한 경우 매장의 노후시설이나 설비의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계약 종료 전일까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귀하의 비용으로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

☞ 해당 없음 :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 행사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 방식 및 내용

☞ 당사는 귀하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귀하와 협의하여 당사의 비용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귀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귀하의 비용부담으로 당사에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당사는 귀하와 협의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을 기재한 경영지도계획서를 제시한 뒤 일정에 따라 경영지도를 진행하며, 경영지도 후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귀하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없음 : 당사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여부
개점 전 교육	1일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역할	이론 및 실습교육	개업 전일	필수
	2일차	주방교육			
	3일차	주방 및 홀 운영 교육			
특별교육	신메뉴 출시 및 조리메뉴얼 변경 등		실습교육	추후 공지	필수

※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교육인원	비고
개점 전 교육	3일	가맹비에 포함	가맹점사업자 포함 1인	
특별 교육	추후 공지	필요시 산정	추후 공지	필요시 사전 통지

※ 교육시간 및 비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는 개업 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개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상품공급중단 및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Ⅷ.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

※ 가맹사업법상의 직영점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명의로 약 22년간 운영하여 오던 본점은 2023년 09월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명의로 운영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이곳의 운영상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끝-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개설팀(02-817-521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ranchise.ftc.go.kr)로 문의 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greencho.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공개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2023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2022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3] 2021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가맹본부 회사명		영업표지 (브랜드)	
제공확인	작성 예시 :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란)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가맹희망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위의 표의 빈칸 모두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 3)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위반 사실
- 4) 가맹사업자의 부담
-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6) 가맹점 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근 가맹점 현황표 제공 확인서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약초마을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_____] 대표 _____(인)

가맹희망자 :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